

인구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다



趙南勳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장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 위주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오다가 가임 여성(15~49세) 1인당 합계출산율이 1.6명 수준으로 둔화된 1990년대에 이르러 더 이상의 출산율 감소는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1996년에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전환했다. 새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출산율 유지와 사망률의 개선,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지위향상,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취업기회 확대,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출생성비 불균형의 회복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인구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되어 2002년에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과거와는 정반대의 인구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관한 국민의식의 잔존, 새 인구정책에 대

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 최근의 세계적인 출산을 감소추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된 것이다.

2001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경 14%에 도달되어 7명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추계는 2000~2005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이 1.47~1.37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계된 것이나 출산율은 2002년에 이미 1.17명으로 저하되어 고령사회에 도달되는 시기

도 더욱 빨라질 것이고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선

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소득, 의료, 여가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의존적인 노인의 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경제 제반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출산력의 감소는 소자녀 규범의 확산, 사교육비의 증대에 따른 아동 양육비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 기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력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더 나아가 출산력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출산율 유지와 사망률의 개선,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지위향상,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취업기회 확대,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출생성비 불균형의 회복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출산축진을 위하여 아동수당, 유급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각종 사회보험료의 면제 등 인구 및

가족복지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많은 식자들은 이들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출산율 촉진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선진국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속적인 인구대책 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현상을 피할 수 있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보험재정을 포함한 복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 정년의 연장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직장이 55세를 전후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어 생애주기로 보면 자녀의 결혼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조기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오정·오륙도, 삼팔선 등 조기정년퇴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문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예견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다목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우도 2023년까지 정년기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한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재정추계는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정년연장도 연금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노인복

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아울러 질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노인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8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의료비 증가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0여 년에 걸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인구문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인구문제가 발생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인구문제의 여파를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청와대에 담당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 출산율의 유지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하는 온갖 지혜가 결집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